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버섯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지원 근거 마련〉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84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의견	4
1. 법 제정 필요성	4
2. 제정안의 체계	9
IV. 조문별 검토의견	13
1. 제명	13
2. 총칙	14
가. 목적	14
나. 정의	16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8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
3. 기본계획 수립 및 통계·연구	22
가. 기본계획의 수립	22
나. 통계 및 시스템 구축	24
다. 연구 및 기술개발	26

4. 버섯배지의 관리	28
가. 버섯배지의 품질관리 등	28
나. 수확 후 버섯배지의 재활용	31
5.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36
가. 교육훈련	36
나. 전문인력의 양성	38
6. 버섯의 품질인증	40
가.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 등	40
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44
7.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	46
가. 우선구매	46
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49
다. 세계화 촉진	51
라. 생산자단체의 설립	53
8. 보칙	55
가. 청문	55
나. 권한의 위임·위탁	57
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8
9. 벌칙	60
10. 부칙(시행일)	6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2. 22.
3. 회 부 일 : 2025.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버섯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고,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채식 재료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임.

하지만 버섯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분산되어 있고 표준화된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버섯의 품질관리, 버섯산업의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버섯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지의 원료, 제조 시설 및 성분 등에 관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안 제9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확 후 배지를 퇴비, 사료, 에너지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 구매시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부대 등의 급식재료 구매 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판매확대, 소비촉진, 세계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차. 버섯산업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산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8조).

Ⅲ. 총괄 검토의견

1. 법 제정 필요성

버섯은 단순히 산에서 채취하는 자연상태의 임산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버섯 생산자들에 의하여 재배되는 특용작물로서의 성격도 가지며, 그 제조·가공 등이 산업을 이루고 있음.

현재 버섯은 2024년 기준 565ha의 면적에서 2,053호의 재배농가에 의하여 재배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약 15만톤 가량에 해당함.

【 최근 3년간 버섯 경작면적, 재배농가 및 생산량 현황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경작면적(ha)	542	558	565
재배농가(호)	2,197	2,169	2,053
생산량(톤)	142,352	154,632	152,671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그런데, 2024년에 주요 버섯재배업인 표고버섯 재배업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재배계획 표본조사에 따르면, 대체로 재배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나타났으며,

그 주된 이유로는 가격하락 및 낮은 수익률, 인건비 상승 및 노동력 부족, 지원정책의 미비 등의 응답이 기록되었음.

【 표고버섯 재배업 대상 재배계획 조사(2024년 기준) 】

1. 표고버섯 재배계획

(단위: %)

구분	응답				
	총계	늘릴 것	현 상태 유지	줄일 것	중단할 것
응답수	100.0	2.8	67.3	16.7	13.1

※ 주 1: 총 응답수(n)=1,336

2. 표고버섯 재배를 줄이거나 중단하려는 주된 이유

(단위: %)

(1.에서 줄일 것 또는 중단할 것으로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함)

구분	응답				
	총계	가격하락 및 낮은 수익률	인건비 상승 및 노동력 부족	판로확보의 어려움	지원정책의 미비
응답수	100.0	63.8	16.7	4.0	15.5

※ 주 2: 총 응답수(n)=399

※ 자료: 산림청, 임업경영실태조사, 2024

이와 같이 표본조사 상에서 재배규모 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버섯산업의 육성 및 규모 확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품질 및 수급관리와 지원정책이 요구될 수 있음.

제정안은 이와 같은 버섯산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버섯배지의 품질관리,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정책 추진을 통하여 버섯산업의 육성과 규모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여 버섯의 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등의 일반법이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전 과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반법과는 별도로 버섯이라는 특정 농산물과 그에 관한 산업만을 다루는 법률을 신규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법률 중에는 제정안과 같이 특정 농산물(인삼, 차, 화훼)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 존재하지만,¹⁾

이들 농산물의 경우 다른 농산물과 특히 구별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법상의 제도를 해당 농산물에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거나, 그 구별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별도의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인삼은 생산에 최대 6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편, 대체로 수삼을 제조·가공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등으로 소비함에 따라 연근·품질 등의 검사가 요구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농산물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을 통한 규율 필요성이 제시될 수 있음.

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의 「인삼산업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차산업법”이라 한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이라 한다)이 각각 해당함

또한, 차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단순한 음식으로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인격적 수양을 위한 다도·다례 등의 문화와 함께 소비되어 온 전통문화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농산물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화훼는 대부분 식품으로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관상용, 가공용 등의 목적으로 소비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농산물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대하여도 단순히 버섯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필요성 여부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버섯이 인삼·차·화훼와 같이 생산방식, 문화적 중요성, 소비목적 등에서 다른 일반적인 농산물과 특별히 구별됨에 따라, 농산물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는 일반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버섯산업의 발전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버섯산업은 생산·유통·가공구조 측면에서 다른 원예·특용작물과 유사하여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한 특수성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제정안의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임.

한편, 제정안과 같이 버섯산업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 각각 한 번씩 발의되었던 이력이 있으나,

제19대 국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상정 후 임기만료폐기되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미상정 후 임기만료폐기되었음.

【 버섯산업 관련 제정법 발의 연혁 】

대수	의안번호	제안일	대표발의자	심사경과	처리결과
제19대 이전	-	-	-	-	-
제19대	1903715	2013. 2. 14.	김재경의원	전체회의 상정 (2013. 6. 17.)	임기만료폐기 (2016. 5. 29.)
제20대	2018092	2019. 1. 8.	손금주의원	전체회의 미상정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제21대	-	-	-	-	-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한편,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²⁾

2)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 비용추계서, ②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2. 제정안의 체계

제정안은 별도의 장 구분 없이 총 2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내용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여덟 개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의 체계 】

내용분류	조번호	조 제목	주요 내용
1. 총칙	제1조	목적	- 법률의 목적을 정함
	제2조	정의	- 법률에서 사용하는 버섯, 버섯가공품, 종균, 버섯산업, 배지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 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함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버섯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
2. 기본계획 수립 및 통계·연구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함
	제6조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제7조	버섯산업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버섯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제8조	연구 및 기술개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3. 버섯배지의 관리	제9조	배지의 품질관리 등	- 버섯배지의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품질기준 적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입·유통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제10조	수확 후 배지의 재활용 촉진 등	- 수확 후 배지를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고, 재활용 시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내용분류	조번호	조 제목	주요 내용
4.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제11조	교육훈련	- 버섯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고,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 대학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음
5. 버섯의 품질인증	제13조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 등	-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음
	제14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6. 버섯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15조	우선구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음 - 국가, 지자체가 군부대 등에 급식재료로 납품하기 위하여 구매 시 기관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음
	제16조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판매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을 보급할 수 있음
	제17조	세계화 촉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제18조	생산자단체의 설립	- 버섯산업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산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7. 보칙	제19조	청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품질인증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을 하여야 함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농진청장,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버섯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제2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품질인증기관 임직원 및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에게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을 의제함

내용분류	조번호	조 제목	주요 내용
8. 벌칙	제22조	벌칙	- 버섯배지의 품질기준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	벌칙	-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 제도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4조	벌칙	-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 제도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조항은 총칙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의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②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항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통계·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버섯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이 되는 통계·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③ 제9조와 제10조는 버섯배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버섯배지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수확 후에 남은 버섯배지를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④ 제11조와 제12조는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항과 함께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⑤ 제13조와 제14조는 버섯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통한 업무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⑥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조항은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선구매, 판매확대, 소비촉진 및 세계화 촉진에 관한 사항과 함께 버섯산업 종사자의 생산자단체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⑦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조항은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재 처분에 관한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형법」상의 수뢰죄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⑧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조항은 벌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버섯배지의 품질기준과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 제도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IV. 조문별 검토의견

1. 제명

제정안은 법률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제명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 정 안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재 특정 산업 또는 조직 등에 대한 진흥 목적에 따라 제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 다수 법률이 채택하는 제명 구조를 따르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은 버섯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통계작성,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버섯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품질인증 제도, 우선구매,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제정안과 같이 함으로써 제정안이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총칙

가. 목적

제정안은 당해 법률의 목적이 버섯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제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버섯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유통, 배지 수급, 연구개발 등 버섯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법률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개별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데 요구되는 기준과 그 입법의 취지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은 버섯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① 버섯의 안전성 확보, ② 품질관리·유통, ③ 배지 수급, ④ 연구개발을 예시로 들고 있으나, 일부 예시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요구됨.

예를 들어, 예시 중 버섯의 안전성 확보의 경우 식품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사무로 규정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³⁾

오직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사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시 중 배지 수급의 경우 제정안이 기본계획에 배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단지 배지의 품질관리와 재활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 역시 목적 조항에 예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법률의 목적 중 하나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버섯이 사람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항 외에, 제정안을 통한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이 직접적으로 국민건강의 증진과 같은 보건의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주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도 활용되는 특용작물인 인삼에 관하여 규정하는 「인삼산업법」의 경우, 법률의 목적을 인삼의 보호·육성과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적 효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⁴⁾

3) 「정부조직법」

제26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4) 「인삼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정의

제정안은 법률에서 사용하는 버섯, 버섯가공품, 배지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법률이 나타내는 바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섯”이란 양송이, 느타리, 표고, 영지, 팽이, 새송이, 송이, 목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균류를 말한다. 2. “버섯가공품”이란 버섯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3. “종균”이란 버섯의 균사체로서 재배를 위하여 배양한 균을 말한다. 4. “버섯산업”이란 종균 배양이나 버섯의 생산·가공·포장·유통·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배지”란 버섯 재배 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물질로서 톱밥, 옥수수 속대, 참나무, 곤충 사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스마트버섯재배”란 버섯 재배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버섯 재배방식을 말한다. 7. “수확 후 배지”란 버섯을 생산·수확하고 남은 배지를 말한다.

제정안은 법률 전반에서 사용되거나 주요 용어에 해당하는 버섯, 버섯가공품, 종균, 버섯산업, 배지, 스마트버섯재배, 수확 후 배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이 경우, 제정안의 정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조제2호에서 버섯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버섯가공품”이라는 명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가공품이라는 명칭에서 버섯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되 식품이 아닌 제품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을 것이므로, 그 명칭을 “버섯가공식품”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의 경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쌀가공품”을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으로 규정하여 식품 외의 제품⁵⁾을 포함하고 있음.⁶⁾

둘째, 안 제2조제3호에서 버섯 재배를 위하여 배양한 균을 단순히 “종균”이라는 명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 「종자산업법」에서 “버섯 종균(種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⁷⁾

셋째, 안 제2조제5호에서 버섯 재배 시 버섯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여 일종의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기물질을 단순히 “배지”라는 명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배지가 버섯 재배 외에도 스마트팜에서의 농산물 재배 등의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버섯배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

5) 쌀을 재료로 만드는 접착제(풀) 등

6)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7)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孢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8) 이 경우 안 제2조제7호의 “수확 후 배지” 역시 “수확 후 버섯배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정안은 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⁹⁾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정안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이 경우, 제정안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면 농가의 소득증대, 국가경제의 발전 등 제정안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9) “도모하는 데”로 띄워쓸 필요가 있음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버섯산업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 정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버섯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이 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제정안을 버섯산업에 관한 일반법¹⁰⁾으로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유사 입법례인 차산업법¹¹⁾과 화훼산업법¹²⁾에서 제정안과 같이 보충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규정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버섯산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정안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다른 법률에 존치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10) ‘일반법’은 사람·사항·장소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넓은 효력범위를 갖고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은 그 목적에 따라 특별한 사람·사항·장소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각각 의미하며, 일반법과 특별법 간의 관계에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1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차산업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1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를 들어, 안 제2조제4호의 ‘버섯산업’ 정의인 “종균 배양이나 버섯의 생산·가공·포장·유통·판매 등에 관한 산업”에 기초할 때, 버섯종균의 생산업은 제정안이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주요 버섯산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버섯 종균이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에 포함됨에 따라, 버섯 종균의 생산업은 종자업의 하나로서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등록 대상에 해당함.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과 그 하위법령에서도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는 버섯을 산림자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산림용의 버섯종균생산업자를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종묘생산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 버섯 종균 생산업 등록 관련 다른 법률의 규정 】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孢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 줄기, 뿌리 등을 말한다.

8.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자의 등록 사항에는 종자의 생산장소(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의 생산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제16조(중요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산림청고시 제2021-1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종자(접·삽수) 및 묘목과 버섯종균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버섯종균

표고버섯종균, 원목재배용 목이버섯종균, 원목재배용 팽이버섯종균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18. 확인

따라서, 현재 주요 버섯산업에 해당하는 버섯 종균의 생산업에 관한 등록제도에 관한 사항이 제정안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제정안과 다른 법률 중 어느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3. 기본계획 수립 및 통계·연구

가. 기본계획의 수립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버섯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버섯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3. 버섯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버섯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버섯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6. 배지의 안전성 확보, 품질 관리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

제 정 안

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통하여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주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제정안이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 중 버섯 배지에 관한 사항의 경우, 버섯 배지가 버섯이라는 식품의 생산과정에서 요구되는 원자재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안전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립하여야 할 사항일 수 있으므로,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포함 사항에서 제외하거나, 적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버섯 배지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버섯 배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관련 사무를 소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통계 및 시스템 구축

제정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한편, 버섯산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제 정 안
제6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버섯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버섯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버섯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현재 버섯산업에 관하여는 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특용작물 생산실적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② 산림청에서 임업경영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송이버섯 채취업과 표고버섯 재배업에 대한 경영실적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수, 면적 및 생산량이라는 한정된 지표만을 작성하고 있고, 산림청은 송이버섯 채취업과 표고버섯 재배업이

라는 한정된 분야만을 작성하는 것으로 보여, 이들 통계만으로 버섯산업 전반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안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모으기 위하여는 제정안과 같이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외에 버섯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농산물과 달리 버섯산업만을 별도로 다루는 정보시스템의 특별한 구축·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 특용작물인 인삼·차·화훼 중에서는 화훼만이 화훼산업법 제7조에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¹³⁾

이는 화훼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주 유통경로인 대다수의 농산물과 달리 7개 화훼공판장¹⁴⁾을 주 유통경로로 함에 따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aT 등이 운영 중인 기존의 농산물 유통 관련 시스템¹⁵⁾에서 다른 농산물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1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생산·유통·수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범위와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aT 양재동, 부산 엄궁동, 한국화훼 고양, 한국화훼 음성, 영남화훼, 부경원에, 광주원에

15) 농넷, KAMIS 등

다. 연구 및 기술개발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균 개발 및 배양기술의 발전 2. 배지의 품질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술 개발 3. 스마트버섯재배의 고도화 4. 버섯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원료 개발 5. 수확 후 배지의 자원화 및 재활용 기술 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차산업법, 화훼산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제정안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유사 입법례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

2.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4. 차의 기능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화훼의 재배·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술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4. 화훼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5. 그 밖에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18. 확인

제정안은 유사 입법례에 준하는 수준으로 버섯에 대하여도 연구 및 기술개발과 그 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버섯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차산업법 제7조제1항제4호와 같이 안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기능성”을 “기능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16)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4. 버섯배지의 관리

가. 버섯배지의 품질관리 등

제정안은 버섯배지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버섯 생산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배지의 품질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지의 원료, 제조 시설 및 성분 등에 관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 유통되거나 수입되는 배지에 대하여 제1항의 품질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배지의 수입·유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배지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배지의 품질기준, 적합성 조사의 방법·절차 및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버섯 생산 시 일종의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하며 버섯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자재인 버섯배지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유통 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버섯은 균으로서 경우에 따라 독성이 나타나는 등 인체에 대한 위해성을 보유할 수 있어 생산단계부터 버섯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주요 자재인 버섯배지의 품질을 관리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버섯배지에 대한 품질관리 제도의 취지가 단순히 버섯배지의 질적 우수성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 측면을 관리하기 위함이라면, 동 제도를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해야 할 것으로 보임.¹⁷⁾

특히,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대한 일반법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도 표준규격·우수관리인증(GAP) 등 단순히 농산물의 질적 우수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¹⁸⁾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으로 하고 있음.¹⁹⁾²⁰⁾

17) 「정부조직법」

제26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버섯배지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사무로 정할 것이라면, 안전성 측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단순히 버섯배지의 질적 우수성과 관련한 제도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버섯배지의 품질기준에 원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품질기준 부적합 시 수입·유통금지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버섯배지 또는 그 원료의 상당수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른 수입·유통금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수입량이 감소한다면 생산자가 버섯 생산에 요구되는 충분한 양의 버섯배지 또는 그 원료를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품질관리 제도가 국내 시장의 공급 측면에 미칠 영향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버섯배지 원료의 수입의존 완화를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국산 홍삼 부산물을 통한 버섯배지 원료 국산 대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므로,²¹⁾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0) 종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분산되어 있던 식품위생·안전 업무를 2013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률상 총괄 관리 중임(국회입법조사처,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ARS 현안분석 제126호, 2020.)

21)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 배지 원료, 국산 홍삼 부산물로 대체” 원가 뚝, 생산성 쑥”, 2025. 12.

나. 수확 후 버섯배지의 재활용

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확 후 배지를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수확 후 배지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수확 후 배지의 재활용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 성분 기준을 충족하는 수확 후 배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확 후 배지를 퇴비, 사료, 에너지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버섯배지는 그 재료가 주로 톱밥, 옥수수 배아 부산물·속대, 곤충 사체 등의 동식물성 잔재물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²²⁾로 분류되고 있음.

이에 따라, 버섯배지는 그 수입 시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로서 신고가 요구되는 한편,²³⁾ 버섯의 수확 후에는 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처분하여야 하는 등 폐기물로서의 처리과정을 거쳐야 함.

2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확 후의 버섯배지(버섯폐배지)는 이를 단순히 비료·사료·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이를 재료로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 후의 버섯배지 자체가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재활용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재활용의 용도 역시 비누·비료·사료·연료 등의 용도로만 한정되고 있음.

【 버섯배지 관련 「폐기물관리법」 상 규정 】

1.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재활용 용도 관련 규정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유통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26 버섯폐배지

시행규칙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2. 나. 8) R-4-8: **동·식물성 유지나 비누 등 유지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3. 가. 1) R-5-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 2) R-5-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 4) R-5-4: **자가 사육하는 가축(지렁이는 제외한다) 또는 양식 어류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3. 나. 1) R-6-1: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
5. 가. 2) R-8-2: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통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유형**
5. 나. 1) R-9-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들거나 폐기물을 무게기준으로 50퍼센트 미만 혼합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유형
- 3) R-9-3: 열분해, 탄화 등 열적 처리방법으로 수소 등의 **기체, 액체 및 고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 4) R-9-4: 혐기성소화·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기체·액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 5) R-9-5: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6. R-10-1: R-3부터 R-9까지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17-26	버섯폐배지	R-4-8, R-5-1, R-5-2, R-9-3, R-9-4, R-10	해당 없음
		R-5-4, R-6-1, R-8-2, R-9-1, R-9-5, R-10	해당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18. 확인

관련하여, 현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이라 한다)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²⁴⁾를 규정하고 있으며,

2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로도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확 후의 버섯배지를 친환경 포장재·완충재의 개발 및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제특례를 부여한 사례도 존재하여²⁵⁾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특례는 현재 최초 2년과 연장 2년의 총 4년의 기간에만 한정되는 임시적인 특례인 점,²⁶⁾ 규제특례를 받기 위하여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이에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확 후의 버섯배지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보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확 후 버섯배지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25)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일껍질, 버섯 폐배지 등 동·식물성 잔재물 규제 특례 통해 제품 원료로 순환이용한다”, 2025. 9.

2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32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첫째, 제정안은 수확 후 버섯배지의 재활용 시 「폐기물관리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재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를 폐기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여, 이를 단순히 처분하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산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촉진 외 사항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거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은 폐기물로 보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음.²⁷⁾

둘째, 제정안은 유해 성분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 분류되는 버섯배지를 폐기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해야 할 사항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순환이용이 필요한 폐기물은 순환경제사회법 등에 따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 폐기물마다 별도의 법률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수확 후 버섯배지의 재활용에 대한 제정안의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임.

27)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가. 교육훈련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버섯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버섯 산업에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버섯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버섯산업에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차산업법, 화훼산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해당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차산업법은 화훼산업법과 달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음.

【 교육훈련에 관한 유사 입법례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18. 확인

제정안은 이 중에서 차산업법에 준하는 형태로 버섯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 교육훈련을 수탁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버섯산업 종사자에게 관련 기술 등을 보급·전수함으로써 버섯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문인력의 양성

제정안은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대학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버섯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차산업법 등의 유사 입법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양성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유사 입법례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18. 확인

제정안은 이에 준하는 형태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버섯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버섯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버섯의 품질인증

가.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 등

제정안은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 정 안
제13조(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버섯 및 버섯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폐업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 정 안

진열 또는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수거하게 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절차 등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농식품 분야에 대하여는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②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술 품질인증 등 다양한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농식품 품질인증 관련 유사 입법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대상품목·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표시방법·인증절차,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18. 확인

제정안은 이와 유사하게 버섯 및 버섯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인증기준 준수를 통한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생산자들이 인증표시를 통해 해당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산자에게 우수 품질의 버섯 및 버섯가공품 생산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이후의 안 제15조의 우선구매, 제17조의 세계화 촉진 등의 규정에서 제정안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및 버섯가공품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유인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유사 입법례 중에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제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일정기간 동안 인증신청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정안 역시 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13조제8항에서는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기심사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나누어 위임하고 있으나,

정기심사는 그 결과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 품질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관한 사항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

제 정 안
제14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인증취소 및 정기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품질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인증·취소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안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품질인증에 필요한 전문성과 인력·시설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인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나타날 수 있음.

이에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품질인증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품질인증과 그 취소, 정기심사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유사한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전통주산업법 등에서는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14조제1항에서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품질인증기관에 관한 유사 입법례: 전통주산업법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산물 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18. 확인

한편, 제정안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입법경제적 차원에서 안 제14조제2항에서 이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약칭할 필요가 있음.

7.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

가. 우선구매

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거나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생산되는 등 특정한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 정 안
제15조(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부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급식재료로 납품하기 위하여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생산되는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우선구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에서 특정한 재화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로,

주로 중소기업, 장애인, 노인 등 특정한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 또는 특정한 인증 등을 받은 재화에 대하여 시행되어, 해당 생산자 또는 제도에 대한 지원규정으로 활용되고 있음.

【 우선구매 규정의 예시 】

구분	근거조문	우선구매 대상
특정한 생산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역중소기업제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노인생산품
특정한 인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1조	우수표시품, 지리적표시품 등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품질인증품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특히, 농식품 분야에서는 특정한 인증을 받은 농식품에 대하여 공공
부문의 우선구매를 규정함으로써, 해당 인증제도에 참여할 유인을 제
공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제정안 중 안 제15조제1항의 사항은 안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증제품의 우선구매를 규정하는 농식품 분야의 유사 입법례와 마
찬가지로 안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우선구매를 규정하는 안 제15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어,

다른 농산물과 달리 버섯 및 버섯가공품에 대하여만 별도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농산물의 우선구매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른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규정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18. 확인

한편, 안 제15조제2항을 수용하는 경우, 실무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법률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와 같이 각각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을 홍보하며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 정 안
제16조(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현재 차산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정안은 이에 준하는 형태로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에 관한 유사 입법례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 및 차를 활용한 식품 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차를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차와 차를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18. 확인

제정안을 통하여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시장개척 및 홍보 시책을 시행하고,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한다면 버섯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경우, 안 제17조의 세계화 촉진 규정에서 지원 대상을 안 제13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및 버섯가공품으로 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6조에서도 마찬가지로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및 버섯가공품을 판매확대 등을 위한 시책의 대상으로 한정할 것인지, 품질인증과 무관하게 전체 버섯 및 버섯가공품에 대한 지원제도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세계화 촉진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 정 안
제17조(세계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버섯산업과 관련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차산업법, 인삼산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해외시장 진출, 수출 촉진 등 해당 농산물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정안은 이 중에서 차산업법에 준하는 형태로 버섯산업의 세계화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지원 규정을 두려는 것임.

【 세계화 촉진에 관한 유사 입법례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세계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육성, 차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삼산업법」

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인삼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인삼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18. 확인

이 경우, 제정안은 차산업법과 달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과 버섯가공품으로 홍보 및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정안이 안 제13조에서 품질인증 제도를 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세계화 촉진 규정이 품질인증에 대한 유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홍보 및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지원범위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수관리인증(GAP)을 규정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같이 해당하는 관계 법령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생산자단체의 설립

제정안은 버섯산업 종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 생산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 정 안
제18조(생산자단체의 설립) ① 버섯산업 종사자는 버섯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산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버섯 및 버섯가공품과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활동 2.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버섯산업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버섯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버섯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생산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정안은 버섯산업 종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산자단체를 설립하고, 해당 단체에서 식문화 보급, 품질향상,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버섯산업 종사자를 집단화·규모화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버섯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다른 특용작물인 인삼·차·화훼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에서는 별도로 제정안과 같은 생산자단체 인가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버섯산업에 대하여만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할 특별한 필요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이 규정하는 생산자단체의 기능은 현재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기능²⁸⁾과 상당 부분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 자조금단체를 통하여도 이와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버섯 품목에는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가 2024년에 임의자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추후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8)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자조금단체 가입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보칙

가. 청문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정안에 따라 지정한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 정 안
제1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3.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인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신분·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⁹⁾

29)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① 안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② 안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③ 안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청문을 필요적 절차로서 규정하려는 것임.

해당 기관들은 그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더 이상 제정안에 따른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및 품질인증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과 같이 지정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청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잘못된 결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준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권한의 위임·위탁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위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 정 안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버섯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 버섯에 대하여는 ① 특용작물로서 그 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② 버섯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이, ③ 임산물이자 산림자원으로서의 관리는 산림청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제정안은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조직법」에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외청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이 경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하여 실제 집행권한을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한편, 그 외에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버섯산업 관련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위임·위탁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정안은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버섯산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에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수뢰죄 등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 신분을 의제하려는 것임 (안 제21조).

제 정 안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버섯산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

「형법」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 수뢰죄 등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수뢰죄 등 】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 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16. 확인

제정안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두 부류의 대상은 모두 본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대행·위탁받아 수행하는 이들로,

본래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의 경우, 그 인증표시를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품질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해당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어 제정안에 따른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제도 중 핵심 제도에 해당하므로,

벌칙 적용을 통하여 품질인증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9. 벌칙

제정안은 버섯배지의 품질기준과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 제도와 관련한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 정 안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유통 금지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배지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진열한 자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2.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홍보한 자
제24조(벌칙) 제13조제7항에 따른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정안은 ① 안 제9조에 따른 버섯배지의 품질기준에 관한 위반(안 제22조)과 ② 안 제13조에 따른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위반(제23조 및 제24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제도의 운영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도를 수용할 경우 함께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 경우, 안 제23조에서는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해당 인증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체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규정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경우 인증표시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에 비하여 벌칙의 수준을 높게 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 인증표시 위반 관련 벌칙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하 “우수표시품”이라 한다)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표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1의2.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표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
2. (생략)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4. ~ 9. (생략)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18. 확인

10. 부칙(시행일)

제정안은 부칙으로서 이 법의 시행일만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의 경우 제정안에 따라 하위 법령 역시 새로이 제정되어야 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6개월보다 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